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안사유

-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471,001	477,001	△6,000	△1.3
일	반 회 계	87,888	87,888	-	-
특 별 회 계	소 계	383,113	389,113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13	5,113	-	-
	도시개발특별회계	378,000	384,000	△6,000	△1.5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360,608	1,328,521	32,087	2.4
일 반 회 계		440,110	440,229	△ 119	△ 0.1
특별회계	소 계	920,498	888,292	32,206	3.6
	교통사업특별회계	1,050	1,050	-	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8,740	98,740	-	0.0
	도시개발특별회계	820,708	788,502	32,206	4.1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 4)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336,800	342,800	△ 6,000	
지방채	국내차입금	지방채증권	모집공채	336,800	342,800	△ 6,000	○ 남부순환로 평탄화, 울곡로 구조개선 사업 공정 조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감소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49,325	49,444	△119		
계속사업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	200	△200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변경	p.973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9,325	49,244	81	○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대부분로 감면을 통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p.976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93,410	61,204	32,206		
계속사업	울곡로(창경공원) 구조개선	2,470	4,500	△2,030	○ 원남동우체국 보상 지연으로 공정 조정	p.980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550	4,000	△3,450	○ 지역민원 행정절차이행으로 공정 조정	p.985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1,486	-	1,486	○ 경찰청 교통협약,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사업비 확보 (준공금)	p.990
	현릉로 확장	-	2,000	△2,000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이 연기되어 연내보상비 집행 불가	p.996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 대응 재정지원	83,500	49,500	34,000	○ 자치구 미집행 도로 보상비 지원 매칭 사업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보상비 확보 ※ 22개 자치구 '20년 구비 1,010억원 확보	p.1001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5,004	1,204	3,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예산만으로는 '20. 6월까지 오류 IC 방향 본교 일부철거만 가능하며, 예산부족으로 공사 진행 불가 ○ '21.11월 준공(개통)을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오류C 편도방향의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 	p.1005
	서소문 고가 개축(성능개선)	400	-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안전관리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개축공사를 위해 신속한 실시 설계용역 시행 필요 	p.1009

IV. 검토의견

1.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878억 88백만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한 4,401억 1천만원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 도시교통실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출 : 기정예산과 동일(10억 5천만원)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51억 13백만원)

나) 세출 : 기정예산과 동일(987억 4천만원)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1.5% 감소한 3,780억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8,207억 8백만원

-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은 2,683억원 규모의 사업을 증액편성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611억원을 감액하여 전체 추정 순규모는 72억원 순증이며,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선 3회 “코로나 추경”의 연장선에서 시가 기존에 추진해 온 기존 코로나-19 정책을 보완·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254억원), ② 민생경제 회복(194억원), ③ 사회적 약자 보호(852억원), ④ 그린뉴딜 활성화(176억원), ⑤ 시민안전을 위한 SOC 사업 지원(150억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안전총괄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60억원) 감소한 4,710억 1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4%(320억 87백만원) 증가한 1조 3,606억 8백만원으로
- 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고통 받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대부료 감면 조치'를 포함하여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서소문 고가 개축' 기본설계용역 예산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임.
- 금회 추경의 목적에는 대부분이 부합한다 할 수 있으며, 그 외 기타로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예산을 340억원 증액하는 것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에 기술함.

2. 사업별 검토의견

가. 세입 예산안

-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60억원) 감소한 4,710억 1백만원으로
-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이었던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사업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사업에서 지방채 발행예정분을 각각 20억원과 40억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임.
- 2020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안전총괄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4개 사업과 관련하여 총 4,05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 중 214억원을 감액하였고, 금회 제4회 추경에서 60억원을 추가 감액하고 있어 본 추경안까지 감안하면 총 274억원의 지방채를 감액하는 것이 됨.

[표] '20년 안전총괄실 지방채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0년 세입예산				발행액
		당초	2회 추경	4회 추경	추경(안)	
	총 계	405,400	△21,400	△6,000	378,000	41,200
	도시개발특별회계	405,400	△21,400	△6,000	378,000	41,200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57,000	-		57,000	-
2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19,400	△2,500		16,900	-
3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41,200	-		41,200	41,200

연번	사 업 명	2020년 세입예산				발행액
		당초	2회 추경	4회 추경	추경(안)	
4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4,000	-	△2,000	2,000	-
5	사당로 (구)범진여객~솔밭로입구 도로확장	4,000	-		4,000	-
6	월드컵 대교 건설	65,000	-		65,000	-
7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 (올림픽대교 남단)	11,000	-		11,000	-
8	성산대교 성능구조 개선	34,000	△3,000		31,000	-
9	서울재물포터널 건설	8,000	△3,600		4,400	-
10	신림~봉천터널 건설	26,000	△3,000		23,000	-
11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92,000	-		92,000	-
12	양재대로 구조개선	19,300	△3,300		16,000	-
13	안양교 확장	14,500	-		14,500	-
14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10,000	△6,000	△4,000	-	-

-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수반하며 미래에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집행 가능성이 담보된 사업들 중에서 부득이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지방채 발행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방채 발행을 일부 과다하게 그리고 개략적으로 편성하는 행태는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당부됨.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사업에서 8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NO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A+B)	추경 사유
총 계			49,434	△119	49,325	
1	안전총괄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200	△200	-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변경(7,900여 개소에서 254개소)으로, 지방자치단체 점검 최소화됨에 따라 평가 유예 및 감액
2	건설혁신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9,244	81	49,325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6개월 ⇨ 6개월간 감면분) 환급 지원

-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¹⁾에 따른 ‘20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 대비한 자치구 전문가 안전점검 지원예산 1억원과 자치구

1)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치구 보수·보강 지원예산 1 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금회 이를 전액 감액하려는 것으로,

- 서울시가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19.10월)에 따라 자치구 점검대상 시설을 포함하여 서울시 관내(자치구 포함) 7,876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 코로나-19 발생으로 중앙부처 소관 시설 위주로 대상이 변경(‘20.5월)됨에 따라 자치구 점검대상을 제외한 서울시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 254개소로 대폭 축소되어, 자치구 평가를 전제로 했던 시비지원 예산의 지출원인이 소멸함에 기인한 것임.

[표]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변경 주요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추진기간	2020. 2. 17. ~ 4. 17.(61일간)	2020. 6. 10. ~ 7. 10.(31일간)
점검수량	서울시 7,900여 개소(전국 10만여 개소)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3,551), 건축공사장(269), 다중이용시설(486), 전통시장 등(123), 의료기관(366), 숙박시설(432), 목욕업소(113), 체육시설(244), 공연장 등(117), 하천시설(5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66), 상하수도시설(14), 열수송관(1), 도로 및 교통시설(239), 해빙기 취약시설(1,223), 문화재(47), 기타(253), 급식소 등 위생점검(277)	서울시 254개소(전국 48,097개소) 급경사지(135), 전통시장(69), 문화재(20), 소규모 공공시설(15), 노유자시설(8), 성폭력피해지원시설(2), 여성복지시설(3), 유원시설(2)
점검기관	30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시민	중앙부처, 공공기관 위주 ※ 지자체 점검 최소화
점검대상	핵심시설 + 다중이용시설	중앙부처 소관 시설 위주 ※ 지자체는 재해취약시설전통시장 등 제한적 참여

- 코로나 19 발생이라는 재난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축소한 것은 부득이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금회 제외된 진단 대상들에 대해선 차후라도 주변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일정을 수립하여 진단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사업은 기정예산 492억 44백만원 대비 8천 1백만원(0.16%)이 증가한 493억 2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 이는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0.3.31 일 개정 시행 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제1항의 단서조항²⁾과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 ‘20.3.2.)” 및 “지하도상가 대부료 감면(환급·상계) 추진계획(안전총괄실장방침, ‘20.6.9.)”에 의거,
- 지난 제3회 추경을 통해 지하도상가 대부료 감면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1년치 대부료를 납부한 점포에 대한 감면분 환급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연락이 원활치 않아 누락된 잔여분(76개 점포, 8천 1백만원)에 대해 최종 환급하기 위해 금회 추가 편성한 것임.

2)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표] 서울시 지하도상가 대부료 감면 현황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점 포 수		환급 감면	상계 감면	복합 감면 (환급+상계)
	금	액			
계	(환급+상계-복합)	2,667	1,502	1,452	287
		10,287,007	3,505,553	6,781,454	
3회 추정	(환급+상계-복합)	2,580	1,426	1,437	283
		10,124,080	3,424,919	6,699,161	
4회 추정	(환급+상계-복합)	87	76	15	4
		162,927	80,634	82,293	

※ 환급 감면: 기 납부 대부료 돌려줌
 상계 감면: 향후 납부할 대부료에서 빼줌

○ 이로써 지하도상가 대부료 환급감면 대상에 대한 금년도 환급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며, 상계감면 대상 잔여분(15개 점포, 8천 2백만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세입(공유재산임대료(대부료), 그 외수입(관리비)) 징수에서 배제(예정)하게 되면 총 지원대상 2,667개 점포에 대한 지원이 일단락됨.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해당없음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안전총괄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남부 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등 총 3건에 74억 8천만원을 감액

하고,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등 총 4건에 396억 86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N0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A)	추경액(B)	추경예산안(A+B)	추경 사유
총 계			61,204	32,206	93,410	
1	도로계획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00	△3,450	550	○ 지역민원 행정절차 이행 등 현장 공정계획을 반영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로 감액
2	도로계획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4,500	△2,030	2,470	○ 원남동우체국 보상 지연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보상비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감액
3	도로계획	현릉로 확장	2,000	△2,000	-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이 연기되어 연내 보상비 집행이 불가능한 편성예산 감액
4	도로계획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49,500	34,000	83,500	○ 자치구 미집행 도로 보상비 지원 매칭 사업으로, 금년 집행가능한 보상비 확보
5	도로계획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	1,486	1,486	○ 경찰청 교통협약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사업비 확보
6	교량안전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1,204	3,800	5,004	○ 당초에 확보한 예산으로는 오류C 방향 본교 일부 철거만 가능하여, 2021년 11월 준공을 위한 추가예산 필요
7	교량안전	서소문 고가 개축(성능개선)	-	400	400	○ D등급 판정된 노후 시설물인 서소문고가를 조속한 시일 내 개축공사 실시하여 시민 안전 확보

- 먼저,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사업은 개봉1동 사거리 종단조정(115m→260m)과 차량용 굴다리 신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과 본선 평탄화 사업구간 내 임시보도 육교 위치 관련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 40억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34억 5천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 지난 제2회 추경 당시에도 금회와 동일한 사유로 당초 사업비 100억원 중 60억원을 감액한 바 있는데, 나머지 40억원 중 금회 추경에서 재차 감리비 5억 5천만원을 제외한 시설비 34억 5천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금년 편성 예산 대부분(5억5천만원 제외)을 감액하는 형국이 됨.
- 본 사업의 경우 당초 전액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충당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서 60억원을, 그리고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에서 40억원을 각각 감액함으로써 동 사업 목적의 지방채 발행 100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형국이 되었으며, 금회 편성한 감리비 5억 5천만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재원에서 투자하는 것임.
- 이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앞서 세입예산안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집행 가능성이 담보된 사업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정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 된 ‘개봉사거리 추가 종단조정’ 및 ‘차량용 굴다리 신설’의 경우, 이들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당초 310억원)를 당초 대비 128억원을 증액하고 공사기간은 24개월 연장(당초 사업종료 ‘20.12.31. → 변경 ‘22.12.31.)한 상태임.
-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최초 투자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18)」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 단서조항 즉,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본 사업이 기성금 31%(83억원)가 기 지급되었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계획 변경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18)> 중 관련내용(p.23) 일부 발췌

7. 재심사

□ 개념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하는 사업
- ※ 대상사업 : 2단계 심사대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심사

□ 시기 : 사업추진 단계별 계약체결 이전

- 기본설계 후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실시설계 이전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공사 계약체결 이전
- ※ 계약 : 주계약은 본 공사계약을 의미(용역계약 · 토지보상계약 등 부대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 (다만,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대상

- (사업 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되,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 여부 등을 전문기관 등을 통해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 기존 굴다리(차량과 보행 겸용)를 보행 전용으로 전환하고 차량용 굴다리를 신설하는 변경안 대신 기존 굴다리에 안전격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는 대안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사업은 율곡로 병목구간 810m에 대해 폭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지하차도 320m)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5억원 대비 20억 3천만원(45%) 감소한 2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서울시가 사업구간 내 구(舊) 원남동 우체국 부지에 대하여 ‘19.9~11월에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원활한 합의가 불가하여 같은 해 12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4월에 수용재결되었으나
- 이해당사자인 서울지방우정청은 이의재결³⁾을 신청(‘20.5월)하고 해당 건물의 임차인인 (주)목우는 행정소송⁴⁾을 제기(‘20.6월)하여 ‘20.8월 현재 이의재결 절차 이행 및 행정소송 진행에 따라 보상비 20억 3천만원의 집행이 불가해짐에 따른 것임.

3) 서울지방우정청측에서는 수용재결을 통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20년 1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예정(토지(건물)가격 재산정 여부 판단)

4) (주)목우(건물 임차인, 영업권 피보상자)측에서 건물이 철거되면서 영업권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보상을 위하여 시행한 감정평가가 목우측이 손해를 본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고 평가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주)목우(대표 박주철) → 서울특별시장)

-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감은 되나 동 사업이 2010년부터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21.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보상지연 문제로 준공기한이 또다시 연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공정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금회 14억 8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19년 이월예산만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20년 6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추가공사 발생으로 4억 67백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공사물량 변경에 따른 공사비 8억 5천만원 증액과 이에 따른 감리비 1억 66백만원의 증액 발생에 기인함.
- 이 중 추가공사비 4억 67백만원은 경찰청 협의에 따른 과속 카메라 설치비(2억 8천만원)와 유지관리기관(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따른 방수공종 변경(1억 87백만원)을 위한 것인데,
- 방수공종 변경과 관련하여 도로계획과는 당초 상부 콘크리트에 '침투식 방수'로 설계하였으나, 상부 콘크리트가 고강도($f_{ck}=40\text{MPa}$)이기 때문에 침투깊이가 시방기준(4mm)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도막식 방수'로 변경한다는 입장임.
- 준공을 앞둔 마무리 단계에서 유지관리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처럼 변경이 이루어진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유지관리기관 등 각종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설계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헌릉로 확장**’사업은 도로확장(연장 1.6km, 왕복 6→10차로) 및 내곡IC 연결로 신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0억원 전액을 금회 감액 편성하였음.
- 이는 노선선정 관련 관계기관(서초구, 강남구)과의 협의지연 및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설계심의 및 기타 협의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보상비 집행이 연내 불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른 것임([표] 참조).

[표] 일정변경 내용 및 사유

구 분	당초 일정	변경 일정	지연사유
기본설계	2019. 7월말	2020. 2	노선선정 협의 관련 관계기관(서초구, 강남구) 협의 지연 → 2019. 12월 완료
실시설계	2019. 11월말	2020. 7월말	- 노선선정 협의 지연 등으로 기본 설계 지연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협의 일정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설계심의 및 기타 협의 등이 순연되어 전체 일정이 2~3개월 지연
설계심의	2020. 3월 초 상정	- `20. 5. 6 설계VE 결과 통보 - `20. 6. 22 : 설계심의 완료	- 심의 결과 반영한 내실있는 설계를 위하여 설계준공기한 연기
기타협의 및 심의 진행	2020. 4월 중	- `20. 6. 1 :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 - `20. 6. 3 : 공공디자인 재심의(보도블록) - `20. 6. 16 : 보도공사 설계지도 점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결정 등)	2020. 5~9	2020. 8~12	변경일정에 따른 향후 절차 - `20.09. : 측량 및 지적분할 - `20.10. : 보상계획 공고

공람공고 및 토지수용(보상) 절차			- '20.11.~12.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및 지급	2020.. 10월.~	2021. 1~	상기 절차이후 보상금 집행이 가능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

○ 다음으로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은 자치구 도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5)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후 20년간 미시행으로 실효(失效)에 처한 도로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6)에 따라 자치구와 매칭으로 시비를 지원(시비:구비=50:50)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495억원 대비 340억원(69%) 증액한 835억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8월 기준 자치구가 확보한 예산 총 1,010억원 대비 ‘20년 시(市) 확보금액은 495억원으로 515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 중 각 자치구의 보상 일정상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보상금 340억원에 대해 금회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참고로, 자치구의 실효 위기에 처한 도로 348개소에 대한 보

5)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 ⑤ (생략)

6)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상을 위해 '20년부터 '22년까지 총 3년간 서울시에서 총 소요 예산(4,730억원)의 50%인 2,365억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음.

[표] 자치구 실효도로에 대한 보상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액	'19	'20	'21 이후	비고
보상비	4,730	427	1,418	2,885	
시	2,365		835 (495)	1,530	():확보예산
자치구	2,365	427 (427)	583 (583)	1,355	():확보예산

-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는 개봉철도고가의 바닥판, 거더 교체 등을 통해 성능개선(DB18→DB24)을 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2억 4백만원 대비 38억원(316%) 증가한 50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당시 지장물 협의, 급전선 위치 조정, 조명 확보, 부지 임시점용, 계측기 재설치 등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으나,
- 예상외로 협이가 4월까지 원활히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금회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의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편성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공사’는 ‘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서소문고가의 전면 개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설계감리에 필요한 예산 4억원을 금회 신규 편성하였음.

- 이는 '19년 3월 서소문고가 콘크리트 탈락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보수 조치 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거더 강선 파단 등 노후화 징후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 장기간 공용에 따른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부분보수만으로는 교량 성능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동 사업은 설계비 17억 9천만원, 철거 후 신설 개략 공사비 291억원으로 총 308억 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공사 중 교통처리를 위한 가교설치 등이 추가될 경우 사업비 약 70억원이 추가 소요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어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보임.
- 이처럼 서소문고가가 서울시의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D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서울시가 시정 역점사업으로 2008년에 시행한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사업에 따라 서소문고가 외부를 감싸듯 덧씌운 알루미늄 외장재로 인해 그동안 통풍과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기존 도시기반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추후 유지관리 부분 등을 간과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유발은 물론 막대한 예

산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 참고로, 동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20.6월) “조건부 추진(2단계 심사 포함)”으로 통과되었는데, 그 조건부 내용은 비용편익, 우회로, 교통안전처리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철거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고가차도 철거·재활용에 따른 교통운임개선방안 수립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16.9월)에서 서소문 고가차도는 경의선 횡단이라는 환경조건으로 인해 철거 시 우회경로의 지정체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 등의 한계로 인해 존치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고가차도 철거·재활용에 따른 교통운영개선방안 수립계획(2016.9.)”
중 관련내용 발췌**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여부 검토>

- 서소문 고가차도는 철도횡단을 위한 고가차도로 철거시 우회경로의 지정체로 인하여 통행시간 증가가 큼(약 14.2분 증가)
- 왕복 4차로의 서소문 고가차도 교통량은 첨두시 2,251대/시, 이용률 79%로 고가차도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철거/존치 여부 판단 분석(SVM 분석)에서 존치대상 고가차도로 분석되었음
- 서소문로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고 있어 지하차도 설치하는 불가능함
- 따라서 경의선 지하화 또는 우회로 확보 전까지는 고가차도 존치가 타당함

<표 5-53>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여부 검토

대분류	소분류	내용
고가차도 기능	통행시간	통행시간 2.6 → 16.8분 (▲약 14.2분)
	고가차도 이용률	고가차도 교통량 2,251대/시 (고가이용률 79%)
	고가차도 주변 교통사고율	사망사고 0건, 중상사고 2건
지역활성화 잠재력	지역활성화 가능성	주거/상업 구성비 62%
	고가차도 주변 관련계획	-
	고가차도 규모(환경저해요소)	음영면적 7.4천㎡